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6.

발 의 자 : 서범수 · 조은희 · 김승수
박정하 · 고동진 · 유용원
이헌승 · 최형두 · 한지아
박성민 · 박충권 · 김은혜
김형동 · 김태규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어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 교류와 합동훈련 등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,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 분야의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39조의8 신

설).

법률 제 호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8(소방업무의 국제협력)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, 국제기구 등과 정보의 교류, 합동훈련 등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9조의8(소방업무의 국제협력)</u> <u>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소방</u> <u>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</u> <u>부기관, 국제기구 등과 정보의</u> <u>교류, 합동훈련 등 국제협력 활</u> <u>동을 할 수 있다.</u></p>